

광 산 중 학 교 규 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중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교는 광산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 (위치) 본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158번길 23에 위치한다.

제2장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4조 (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조기 진급 및 조기졸업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5조 (학년 · 학기)

- ① 본교의 학년도는 매년 3월 1일 시작하여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 ②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학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하고,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날부터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조 (휴업일)

①본교의 휴업일은 다음과 같다.

- 1. 관공서의 공휴일
- 2. 개교기념일(5월 1일)
- 3. 여름 휴가
- 4. 겨울 휴가
- 5. 재량휴업일 (기타 휴가를 재량휴업일로 변경. 추가 6호)
- 6. 주5일 수업 실시에 따른 토요 휴무일

②제1항 제5호 내지 제6호의 휴가 기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의 수업 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절할 수 있다.

③제1항 각 호 외의 비상재해 및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등교중지) ①학교장은 학교보건법 제7조와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검사의 결과 전염병 예방법 제2조에 규정된 전염병에 감염되었고 전염되었다는 혐의가 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중

지를 명할 수 있다.(단, 진단서, 의사소견서 등 반드시 필요)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교중지를 명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질환증세 또는 질병 유행의 양상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학급수 및 학생 정원

제8조 (학급) 학급 편제는 교육감의 수용계획에 의한 학급배정 결과에 따라 편성 운영한다. 학급 수는 관할교육청 교육장이 배정한 학급으로 한다.

제9조 (학생정원)

학생 정원은 매 학년도 교육감이 정하는 중학교 학급당 정원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4장 교육과정, 현장(체험)학습, 수업일수 및 평가

제10조 (교육과정) ①각 학년의 교육과정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 수준의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여 정한다.

②학교에서 운영되는 교육과정의 편성은 교육과정운영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하고 관할청에 보고한다.

③현장(체험)학습은 다음 각 호에 의하며,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기간을 출석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1.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실정에 따라 국내외를 포함한 공동체험학습, 개별학습, 가족동반 체험학습, 자매결연을 통한 체험학습 등 다양한 형태의 현장체험 학습을 실시할 수 있다.
2. 학교장은 학부모가 10일(수업일 기준) 이내의 가족과 함께 하는 국내외 현장체험 학습을 신청할 경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심사 후 허가하고 이를 통보한다.(단, 현장(체험)학습의 출석 인정기간 연장은, 그 사유에 대하여 학교장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1개월 이내로 승인할 수 있다.)
3. 학교장은 학부모가 1개월 이내의 국내외 교류학습을 신청할 경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관련학교장 상호 협의를 거쳐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수업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위탁학교의 생활기록을 통보 받아야 한다.
4. 현장체험학습을 희망하는 학생은 체험학습 신청서와 현장체험학습계획서를 제출

하여 심사 후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체험학습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현장체험학습 기간의 성적은 성적관리규정이 정하는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1조 (위탁교육) ①학교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와 광주광역시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학업을 중단한 학생 및 개인적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②교육대상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위탁교육 희망학생 (취학면제 및 유예중인 자는 복학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
2. 학교 내 생활교육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 및 가정학습 판정을 받은 학생 중 희망학생 (이 경우 특별교육 이수로 간주)
3.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

③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간에 대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 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의한다.

- ④학교의 장은 취학면제 및 유예를 희망하는 학생이나, 특별교육 및 가정학습의 징계를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업일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 운영,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학교장은 수업일수의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한다.

제13조 (출·결석) ①본교의 출·결석은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훈령 제280호) 및 그에 대한 해설 및 기재 요령에 따라 처리한다.

- ②여학생의 생리로 인한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생리통으로 인해 수업 출석이 어려운 학생에 한하며 보호자 또는 보건교사, 학급담임교사의 확인을 거쳐 처리한다)

- ③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 학생의 결석은 피해 학생 보호 조치(법률 제16조 1항)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14조 (고사)

- ① 정기고사는 학기별 지필고사(1차, 2차)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학업성적평가 관리나 각종 고사 시 부정행위자의 처리는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른다.

제5장 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전출

제15조 (입학자격) ①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중학교의무교육대상자로 한다.

1. 해당학년도에 광주광역시 관내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2. 교육감이 행하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3.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서 6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4.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제16조 (입학 시기) 입학 시기는 학년 초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본교의 입학은 교육장이 배정한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17조 (재취학·편입학)

- ① 학교장은 제출 서류를 갖추어 학생 또는 보호자가 재취학·편입학을 신청할 경우, 거주지의 위장 전입 여부, 제출 서류의 하자(허위)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허가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의무취학면제 및 유예 결정을 받은 자가 재취학 하고자 할 경우에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이수인정 평가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 ③ 본교에 편입학할 수 있는 자는 편입학 하는 학년의 전 학년까지의 과정을 수료한 자 및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이어야 한다.

제18조 (전입학)

- ① 본교에 전입학은 학교장이 학칙에 따라 학생 정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허가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본교에 전입학 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받아야 하며, 실제 거주 및 이전 확인을 해야 한다. 단, 위장전입시 전입학을 불허할 수 있다.

제19조 (전입학 서류) ①본교에 전입학 하려는 자는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장이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전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귀국자 특례 입학·재취학·편입학)

①장기간 외국생활 후 귀국하는 학생의 특례입학 자격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국민 (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 이상 거주한 자에 한함)
2.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3.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 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한 자.
4.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 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 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

②학력 및 학년 인정은 다음과 같다.

1. 재취학 및 편입학 대상자는 요구 서류를 제출한 후,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결정한다.
2. 특례 편입학은 외국 재학학교와 동일한 학교과정, 동일학년, 동일학기 이하로 편입학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6개월 이상의 학업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총 수학 기간을 고려하여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편입학 학교 급 및 학년을 결정한다.
3. 학년배정은 외국 전 학년 재학 증명서와 성적증명서상의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계산하며 우리나라 학제(12학년제)에 맞추어 계산한다.
4. 외국에서 수학한 유치원, 어학연수(ESL), 개인학습(가정교사) 등은 학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거주 국가의 중학교 학제가 7년~8년인 경우 외국에서 졸업하였다 하더라도 맞는 학년에 편입학하여야 한다.

③외국학교 과정 및 학교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과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인정한다.
2. 외국의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 급별 교육과 정상의 교육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 과정과 학년을 인정한다.(초등학교-외국의 1~6학년과정, 중학교-외국의 7~9학년과정, 고등학교- 외국의 10~12학년과정)
3. 외국학교는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만 인정한다.(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4. 특례귀국자는 일반편입대상자의 허용 정원과 별도로 해당 학년 정원의 2% 이내에서 허용한다.
5. 일반귀국자는 전·편입학 및 재취학 학생을 포함하여 해당 학년 정원의 5% 이내에서 허용한다.

제21조 (타교 전학) ①학생이 거주지 이전으로 타 학교군으로 전학을 하고자 할 때에

는 거주지 이전 사실을 확인받고,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 받아 해당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편입학한 학생이 타고 전학을 희망할 경우 전·편입학한 날로부터 1개월 이후 (방학기간 제외)에 신청할 수 있다. 단, 광주광역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학할 경우 타당한 사유 입증 시 예외로 한다.

③ 타고에서 본교로 전·편입학 후 6개월 이내에 전학을 희망할 경우 원소속 학교로 전학 처리한다.

제6장 과정의 수료 및 졸업의 인정

제22조 (수료·졸업) ①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의 인정은 출석일수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 정도 등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한 차상급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함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의 평가와 학교장이 정한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②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제23조 (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이수하였다고 인정한 자와 교과목별 조기 이수에 의하여 조기 졸업하는 자에게는 제1호 서식에 의한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24조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① 초·중등교육법 제27조 1항 및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기 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며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년도에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 성취도가 모두 A인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 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 기관(중앙 행정 부처)이 주관·주최한 전국 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 올림피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4. 기타 학교장이 정하는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탁월하게 우수하다고 평가된 자

③ 1.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세부 내용은 ‘광산중학교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대상자는 학년별 학생수의 1%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 자로 한다.

④ 조기진급자의 성적처리는 성적을 산출하거나 기록하지 아니하고 종합생활기록

부의 이수하지 아니한 학년란에는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으로 기록한다. 다만 부득이 성적을 산출해야 할 경우에는 조기진급 직전 학년의 과목별 성적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25조(조기진급 및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 부적응 현상이 심각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 및 담임의 환원신청을 받아 제도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원시킨다. 다만 환원신청기한은 조기진급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환원에 따른 성적처리 등의 규정은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6조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 ① 학교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항을 모두 만족한 경우에 상급 학교 조기 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직전 학기까지 이수한 국어, 사회(역사 포함), 수학, 과학, 영어의 학업성취도가 모두 A인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고등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자
- ③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27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해(또는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담임교사가 추천한다.
 2. 교무회의에서 제26조 ②항의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른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3. 위원회로부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이수인정 평가를 받는다.
 4. 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5.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 졸업으로 인정한다.

제8장 학생포상 및 징계, 학생자치 활동

제29조(포상)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을 하여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0조 (징계)

- ①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5일이내)
 2. 사회 봉사
 3. 특별 교육 이수
 4. 출석 정지(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
-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제31조 (학생 자치활동의 보장) ① 본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고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을 통한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회를 둔다.

②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32조 (학생생활규칙)

- ① 학생의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칙’으로 정한다.
- ② 학생생활규칙은 민주적 절차를 거쳐 필요한 사항을 제·개정한다.

제9장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제33조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 ① 학교장은 의무교육대상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취학의무 면제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야 한다.
- ③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보호자와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⑤ 유예하려는 자는 그 사유를 갖추어 보증인 연서로서 학교장에게 유예원을 출원하여야 한다.

제34조 (유예자 등의 학적관리)

- ①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이후 유예 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 ② 제33조의 취학의무 면제자나 유예 결정을 받은 자 및 본 조 제①항의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가 취학하거나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및 조기 졸업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 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35조 (독촉·경고 및 통보) ① 학교장은 의무교육대상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호자 또는 고용자에게 학생의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경고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을 할 때
2. 학생이 고용자에 의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이 방해 당할 때

② 학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또는 경고 후 7일을 경과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때나 2회 이상 독촉 또는 경고한 때에는 그 내용을 교육장에게 보고한다.

제36조 (의무교육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학교의 장은 당연직으로서 위원장이 된다.
3. 교감, 교무부장, 학년부장, 전문상담교사(또는 전문상담사), 보건교사, 학교폭력 담당교사 중 2인 이상을 위원회 내부 위원으로 포함한다.
4. 위원회 외부 위원에는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경찰공무원, 읍면동 소속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역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학부모 중에서 2인 이상 포함한다.
5.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6.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며, 만료일은 3월 31일로 한다.

② 회의 개최

1. 위원회는 취학 독려 및 독촉, 전출이후 미전입한 학생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무단장기 결석생 발생 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 할 수 있으며, 개최 여부 및 그 시기는 학교장이 결정 한다.
2. 위원회는 학기 시작 전 또는 학기 시작 직후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신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입학기일 이후 취학 유예 신청, 무단 장기결석 발생 또는 보호자 동의 없

이 이루어지는 전학에 관해 심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회의 개의 및 의결

1.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2.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록 작성 등

1. 회의 결과의 요지를 기록한 회의록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2. 취학의무의 면제 및 유예 결정 등에 관한 심의는 승인 또는 불승인 사유를 결과보고서에 상세히 기록한다.

제10장 학칙개정 절차

제37조 (학칙 개정 절차)

- ① 교직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학교규칙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 ②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한다.

부칙

1. 본 학칙은 서기 2021년 4월 23일 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은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

부칙

1. 본 학칙은 서기 2023년 12월 11일 부터 시행한다.
2. 본 학칙은 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학교장이 이를 정한다.